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상조절기술 및 기상조절기술업 정의 신설 등 〉
■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297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3

I . 제안경위

【의안번호 제2211297호】

1. 발 의 자 : 김위상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4.
3. 회부연월일 : 2025. 7.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산업을 기상 관련 상품을 제조·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을 하려는 자를 기상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도적인 기상조절을 통해 기상 변화를 일으키는 기상조절기술 및 기상조절기술업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재난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상조절기술의 개념을 현행법에 포섭하고 해당 기술을 제공하는 업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상조절기술”을 인공강우(人工降雨), 대기조성(大氣組成) 조절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기후 및 기상현상을 조절하거나 변화시키는 기술로 정의하고 기상조절기술업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상재난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Ⅲ. 검토의견

1. 기상조절기술·기상조절기술업 정의 신설 및 기상사업의 종류에 기상조절기술업의 추가

개정안은 기상조절기술·기상조절기술업의 정의를 신설(안 제2조제1호, 안 제2조제1호의2 및 안 제2조제7호의2 신설)하고 기상사업의 종류에 기상조절기술업을 추가(안 제6조제1항)하여 해당 기술을 제공하는 사업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상재난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김위상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산업”이란 기상 관련 상품을 제조·공급하거나 <u>용역</u> 을 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 <u>기</u> <u>상조절기술의 제공 등 용역</u> ----- -----. 1의2. “ <u>기상조절기술</u> ”이란 인공 <u>강우(人工降雨), 대기조성(大氣組成) 조절 등 물리적·화</u> <u>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기후</u> <u>및 기상현상을 조절하거나 변</u>

2. ~ 7. (생략) <u><신설></u> 8. ~ 10. (생략) 제6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①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 컨설팅업 또는 <u>기상장비업</u>(이하 “기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 력과 시설을 갖추어 기상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u>화시키는 기술을 말한다.</u> 2. ~ 7. (현행과 같음) <u>7의2. “기상조절기술업”이란 기 상조절기술을 사용하여 「기 상법」 제19조의3에 따른 기 상재난의 예방과 수자원확보 를 위한 기술을 개발·제공하 는 사업을 말한다.</u> 8. ~ 10. (현행과 같음) 제6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① ----- -----<u>기상장비업, 기 상조절기술업</u>-----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기상산업진흥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목
적으로, 기상산업 및 기상사업을 정의하고 기상사업자의 등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¹⁾. 현행법은 기상산업을 기상 관련 상품을

1)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산업”이란 기상 관련 상품을 제조·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
2. “기상예보”란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상상태를 예상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상감정(氣象鑑定)”이란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을

제조·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을 하려는 자를 기상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도적인 기상 조절을 통해 기상 변화를 일으키는 기상조절기술 및 기상조절기술업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현재 기상 조절과 관련한 기술은 현재 연구개발 단계로서, 인위적으로 기상현상을 조절하는 행위는 기상법에 따라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행 가능함²⁾.

그런데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재난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상조절기술의 개념을 현행법에 포섭하고 해당 기술을 제공하는 업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태풍, 호우, 산불 등 기상·기후 재해

추정하거나 그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상예보업”이란 일반·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예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기상감정업”이란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감정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기상컨설팅업”이란 기상정보를 분석·평가하여 경영활동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기상장비업”이란 기상측기기를 제작·수입·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기상예보사”란 기상예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9. “기상감정사”란 기상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10. “기상사업자”란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2) **법 제18조(기상 조절의 금지)** 기상청장 외의 자는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눈·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대한 대응 및 예방을 위해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기술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조절기술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해당 기술을 제공하는 사업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상재난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내용임.

다만,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기술은 아직 연구개발 단계로 기상사업의 독립된 업종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기상 조절 행위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기상법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므로 기상 조절의 사업화는 충분한 검토 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기상산업진흥법은 기상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특정 기상기술을 정의하는 것은 법의 목적과 체계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시 직전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결과를 포함

개정안은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시 직전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결과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김위상의원안
제4조(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생략) 2. ~ 7. (생략) <u><신설></u> 3. ~ 7. (생략)	제4조(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2. ~ 7. (현행과 같음) <u>2의2. 직전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u> 3. ~ 7. (현행과 같음)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³⁾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기상청장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에 관한 방법의 규정에서는 직전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⁴⁾.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내실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이후 실적 평가결과를 차기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추진과정의 환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2

③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4조(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그 발전 전망
2. 기상산업의 진흥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3.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추진과 그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4.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투자의 확대에 관한 사항
5. 기상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기상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상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